

공민권법 제6장 고소 절차

공민권법 제6장은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에 근거한 차별 대우를 금지합니다. 출신국은 어떤 사람이 태어난 또는 그 사람의 부모나 조상이 태어난 특정 국가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출신국 또는 언어 사용 능력에 무관하게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Foothill Transit의 정책입니다.

자신이 Foothill Transit에 의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근거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민권법 제6장 고소 양식(Title VI Complaint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공민권법 제6장 고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1-800-743-3463 으로 전화를 하여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양식은 Foothill Transit의 웹사이트인 <http://www.foothilltransit.org/titlevi/> 또는 <http://www.foothilltransit.org/library/> 또는 모든 Foothill Transit 상점들 또는 West Covina에 소재한 Foothill Transit의 행정사무실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Foothill Transit's Title VI Program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1-800-743-346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양식은 다음 주소에 소재한 Foothill Transit의 행정사무실 또는 대중교통 상점으로 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West Covina Transit Store and Administrative Offices: 100 S. Vincent Avenue 2nd Floor, West Covina, CA 91790
- Claremont: 200 W. 1st Street Claremont, CA 91711
- City of Industry at Puente Hills Mall: 1600 Azusa Avenue Industry, CA 91748
- El Monte Station: 3501 Santa Anita Avenue El Monte, CA 91731
- Pomona: 100 W. Commercial Street Pomona, CA 91768

고소인은 다음의 미국 연방 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주소로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FTA Office of Civil Rights, 1200 New Jersey Avenue SE, Washington, DC 20590

Foothill Transit은 철저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고소인이 주장되는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고소를 제기할 것을 권장하며, 더 나아가 고소인은 완전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요청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경우, 조사 과정에서 Foothill Transit 버스에 설치한 카메라의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비디오는 상황에 따라 주어진 시점에서 7일 내지 14일이 지난 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Foothill Transit 정책에 따라, 제기되는 논평은 가능한 한 논평이 제기된 후 5일 이내에 조사되고 대처된 후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 Foothill Transit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고소인이 응답을 하고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Foothill Transit은 이미 제공된 정보로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를 철회하거나 더 이상 조사의 추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소된 사건이 조사된 후, 해당 조사의 책임을 담당하는 직원이 고소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그 해결의 내용을 보여줄 것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Foothill Transit은 철저한 조사 및 답변을 보장하기 위해 고소인이 항소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Foothill Transit

공민권법 제 6 장 고소 양식

Foothill Transit 은 개정된 1964 년의 공민권법 제 6 장에 의거해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으로 인해 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제외되거나 서비스 혜택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념하고 있습니다. 공민권법 제 6 장 고소는 반드시 주장되는 차별 대우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고소 제기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 정보입니다. 본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고소를 제기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800-743-3463 으로 고객 논평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본사의 대중교통 상점(Transit Stores)을 방문하십시오. 작성된 본 양식을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Foothill Transit, attn: Title VI - Customer Comments, 100 S. Vincent Ave., Suite 200, West Covina, CA 97190

귀하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른 전화번호:
시, 주, 우편번호:	
차별 대우를 당한 사람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 성명(들):	
주소:	전화번호:
사건 발생일:	버스 번호/노선/장소 (해당되는 경우)

뒷면에 계속...

다음 중 차별 대우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하나만 표시)

- 인종
- 피부색
- 출신국(제한된 영어 사용 능력)

주장되는 차별 대우의 발생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Foothill Transit 담당자들의 이름 및 직책을 기재하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했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십시오. 더 이상의 지면이 필요하신 경우, 추가적인 본 양식의 용지를 이용하십시오.

그 동안 다른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역 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그 기관/기관들 및 연락처 정보를 다음에 기재하십시오:

기관/기관들:	연락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상기 기소를 읽었으며 그 내용이 본인 최선의 지식, 정보 및 신념에 근거한 진실임을
단언합니다.

서명: _____ 일자: _____

